

建築作品活動과 法的制約

安 仁 模

“建築土”編輯部에서 上記題目的 主題로 筆者에게 記述依賴가 있어서 봇을 드는데 與題의 概念이 언듯보기에 쉬이 잡힐것 같지만 實在즉 너무 包括的이어서 困惑을 느끼면서도 題名이 뜻하는 바 오늘날 우리들 建築土들이 当面한 問題로서 看過할 수 없는 建築土들의 苦衷이 서린重要한 대목이 가로 걸쳐있기에 所見을 陳述코져 한다. 題目的 脈幹을 크게 나누어서 建築作品活動¹ + 法的制約² 으로 2個區分할 수 있으되 1. 建築作品活動이란 그야말로 建築土法에서 規定할 登錄 建築들의 特權이며 또한 그에 따르는 責任이 鮫인 課題라 할 수 있다.

위 句節에서 “建築”을 떼어버리면 단지 “作品活動”으로서 恰似 文工芸部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創作을 비롯한 作品活動으로 더러는 그才質의 優秀함을 認定받아서 世上에 頭角을 나타내며 겹쳐서 그 作品活動의 結実이 훌륭한 것이면 作家의 名聲을 더 높여준다. 이 경우의 作品은 더러는 訂文者가 있지만 大概의 경우는 別다른 訂文者가 없더라도 作家 스스로가 對象을 設定하여서 專念으로 그 作品을 完成하여 展示 또는 其他方法으로 世上에 알리면 成功, 失敗間에 그 作品의 優劣審判은 関係世人의 眼目과 与論으로 歸結지어진다. 敷衍하면 特別한 訂文者 없이도 (勿論 訂文者가 있을 때도 있지만) 作品活動은 作家 스스로가 作品對象設定하여 天授의 才質과 不屈의 努力에서 얻은 熟練과 確固한 信念 및 着實한 實行으로 遂行할 수 있다. 例컨대 文芸部門의 詩, 小說, 戲曲, 音樂部分의 作曲, 演奏, 書畫部門에서 書芸, 絵畫, 彫刻部門에서 彫刻等等 다같이 共通의 与件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建築作品이란 建築의 実物完成까지考慮한다면 거의 100%가 訂文者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것이 実情이다. 따라서 建築作品의 所有權이란 訂文者와의 契約에서 (創案된 設計圖書의 所有權마저도 訂文者の 歸屬으로 넘어가고 다만 創作著作權이란가를 얼마만큼 行使하는지도 難堪한 事情임이 現実이다.) 저절로 衰失된다. 다

시 말하면 建築作品이란 거의가 訂文者가 있어야만 이루어지고, 建築作品은 그 作家에게 서보면 所有權 또는 創作著作權마저도 “完全내것”(作家所属)이 할수 없는 것이 嚴格한 意味에서의 分析이 되겠다. 그러나 創作 著作權은 国家에서 또는 社會에서 建築作家에게로 明確하게 歸屬시켜 주는 確實한 制度와 그 權利行使를 当然히 建築作家가 發揮할 수 있도록 保護하여 주어야할 것이다. 題目的 “建築作品活動과 法的制約”이란 이미 法的制約以前에 이 順序로 2個區分할 수 있으되 1. 建築作品活動이란 그야말로 建築土法에서 規定할 登錄 建築들의 特權이며 또한 그에 따르는 責任이 鮫인 課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起起되는 問題는 作品對象을 求하는 일로서 訂文者 찾기, 또는 訂文者誘引이라는 課題에 부닥친다. 따라서 建築土들 間에는, 訂文者誘引을 둘러싸고, 必然적으로 競争이 誘發되어, 競争이 붙는 곳에는 自然히 競売現象이 나타남은 資本經濟構造社會에서는 当然한 狀況이겠지만, 問題는 建築土가, 지켜야할 倫理規約과 官認까지 얻은 建築土業務報酬率에 對한 違反行為에 있다. 一般商界에서 가끔 빛어지는 物品投賣와도 같이 이른바 “dumping”을, 서로들 論難은 하면서도 작고 크고의 差異는 있을지 인정 아예, 한번도 報酬率을 낮춰서, 한일은 없다고 斷言할 建築土가 果然 몇 사람이나 될까? 바로 이것이 建築土들 間의 苦惱이며 建築土協會의 解決을 못보는 年來의 宿題로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위에서 말한바 建築作家가 他分野의 作家와는 特異한 性格을 띤 作品活動을 하여야 하기에, 그러한 作家의 業務限界와 作家의 資格을 法的으로 規制한 것이 建築土法 및 同施行令이며 建築土의 品位向上과 質的向上을 目標로 同法規는 公布實施되고 있으며, 建築土業務 곧 建築作品活動은 免許를

얻은 建築士가 事務所登録을 同法令節次에 따라 마친 사람만이 할수 있다. 註文者 있어야 成立이되는 그 対象作品은 大量은 種類의 用途別로 分類되겠지만 그 代表의in 것을 든다면 첫째 国民의 住居를 為한 容器로서, 다음은 国民의 事業活動(個人, 団體 및 国家에 이르기 까지)을 収容하는 容器로서의 建築일 것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지닌것이기에 建築作品活動이란 그 対象作品 곧 “建築”의 質의 向上과 危害防止 및 安寧秩序를 為하여 国家에서는 建築法을 為始하여 여러가지의 関係法規(都市計画法 消防法等)를 制定公布하여 実施하고 있어서 作家自身 및 作品對象物에서 안팎으로 法的制約을 받는 作品活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強調하면 建築作品活動이란 免許를 얻은 建築士가 法的節次의 事務所登録을 마친다음 每作品마다 모든 関係法規의 制約을 適用시키면서 遂行시키는 活動인 것이다. 建築作品活動이 저렇듯 制約을 받는 相對法規는 建築法, 都市計画法 및 建築士法 등으로 5.16前까지는 우리의 것이 못되는 日政時 및 美軍政時를 거쳐서 日政時 것을 踏襲適用하던것을(그나마 建築士法은 日政時에도 없었음) 5.16革命最高會議에서 史上처음으로 純粹우리의 것이 오늘에 있도록 制定公布한 것이다. 그 中에서도 建築士法이어야말로 大韓民国에서 “建築士”가 무엇이며 또 文字 그대로 建築에 関係되는 무슨職種名인데 무엇을 하는 職種名稱인지를 모르던 時期에 新規制定公布된 法規로서,

오늘의 全國土에서 国家의 繁榮發展된 影像을 視覺感取할수 있도록 하여준 母胎役割의 法令인 것이다. 그로 因하여 建築士가 생겨났고 오늘의 建築士協會가 저렇듯 세워져서 우리나라의 全建築士를 包容(事務所登録開設者)하여 會員으로 삼고 있음은 군말이 필요 없겠다. 1963年12月 16日은 建築士法最初制定公布한날로 建築士라면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感激의 날인 것이다. 同法制定公布当时는 国家의 形便이 5.16革命을 겪은지 3年째의 年末로서 国士의 外形 모습이 4.19革命以後의 国論의 分裂, 学園騷亂으로 学風의健全한 定着을 볼 수 없었고 政治不安定속에서의 經濟沈滯의 連續에서오는 国民生計의 威脅 속에서 허덕이던 5.16直前의 餘波를 안고있던 때이어서 京鄉間에 建設의 貌襲이란 보잘것 없었던 때였었다. 5.16以後 2年半 동안의 当時の 革命最高會議에서의 国家社会全般에 걸친 각分野의 基本法의 起草審議事業은 바깥에서보는 国民의 눈으로서도 그 不退転의 努力과 勇氣 그리고 오직 国家中興을 実現시키려는 誠實과, 슬기를 때때로의 經過發表된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各種法律의 制定公布를 볼 적마다의 当時の 国民의 한 사람으로 느꼈던 感懷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1963年 12月 16日은 最高會議解体의 날로 記憶되는데 바로 이날 公布된 法律中의 하나로 “建築士法”이 포함되어 있으니 建築作品活動에 関係되는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지난一二年間에 同法 및 同施行令의 改正이 있었으나 最初公布当时의

同法原文은 別로 遙色이 없는 完璧한 것임을 外国人의 눈을 거쳐서 評判하는 말에서도 看取 할수 있었다. 回顧하면 当時の 建設部長·次官을 비롯하여 同部内, 関係公務員의 建築作品活動에 對한 先見之明과 誠實한 努力 및 슬기의 充滿이 同法起草에서 公布까지의 根幹을 이루었고, 民間인 우리들 分野에서, 大韓建築士協會의 初代會長이었던 故金舞河先生을 為始한 斯界 및 学界의 先覺建築人 여러분들의 協賛 및 諮問에 応答奉仕한 官民相助 協力의 結實이며 또한 아무리 그러한 좋은 法律이라도 聰明한立法機關과 英明한 指導者の 判断없이는 制定公布의 빛을 볼수 없는 것으로, 오늘의 우리들이 推抑하는 大統領

이 바로 그때의 最高會議議長이셨음을 想起하면 그분의 英明은 建築作品活動이라는 分野에도 벌써, 이미 細心한 觀審속에 번쩍였던 것을 짐작 할수 있겠다. 萬一그때(1963年12月12日)에 “建築士法”이 어떤理由로 制定을 또는 審議를(不必要 또는 時期尚早等의 理由)廢棄 当하여 公布를 보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形便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아찔할 따름이다. 이와같이 建築士들에게도 歷史의이라할 同法公布로부터 歲月은 흐르고 흘러서 今年 1979年 12月 16日이면 滿16週年的 年輪을 그린다. 同法에 依한 建築士가, 資格試驗等을 거쳐서 第1회로 舉出되기는 1975年 초여름의 일이었다. 같은해의 10月下旬에 同法에 依한 “大韓建築士協會”가 發起를 거쳐 創立總會를 가졌다. 今年 10月로 滿14年이 되겠다. 바꾸어 말하면 建築作品活動을 法的制約下에서 遂行하여온지 滿14年이 된다는 뜻이 된다. 위에서도 말한바 法的制約이란 国家가 附与한 職名인 建築士의 使命으로 自身의 品位保全을 지닌채로 建築作品을 하되 作品對象亦是 모든 関係法規를 適用시키는 制約下에서 活動한다는 말이 되겠다. 이말은 겉으로 들어서는 制約에서 制裁로 連結되는 相關 函数觀念과 聽取語感의 切迫에서 오는 拘束感으로 그렇게 좋은 말은 못 된다. 또한 制約이란 語意內容이 制約과 制裁가 因緣이 안닿는 것도 아니다. 制約을 疏忽히 相對하면 制裁의 굴레를 感受하게된다. 建築士의 行動處身은 살어름을 딛고 거닐듯 操心이 앞서는 일이라 하겠다. 자칫 萎縮에 휘말려 意氣銷沈마저 招來하기도 쉽다.

이러한 現象은 近間一, 二年사이의 建築士業務不誠實理由로 여러 同僚會員들의 業務停止措置의 經驗을 보더라도 알수 있다. 그것이 몇個月이라는 短期의 것이라도 建築士業務가 各個人의 生業인 까닭에 그被害은 莫甚한 것이다. 近年과 같이 繼續되는 建築沈滯속에서 한建築士를 除外하고는 去概가 같은 事情인 줄 알지만 다른 収入源의 事業이라곤 都是, 모르는 建築들로서는 呼訴할 수 없는 딱한事情이 아닐 수 없다.

“建築士”란 그 壮한 이름을 뽑낼 程度의 内容이 담기기도 하였을 터인즉 周邊의 社會氣風은 對建築士理念에 啓

嗇하다. 作品受註에서부터 그 報酬率을 예누리式 来來로 要請하며 또 応한다. 患者가 病院에 가서 診察料治療費를 어느만큼이나 예누리 하여보나? 因戚關係나 特殊한 知面關係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없는예누리去來로 請求書額數 그대를 꼬박꼬박치루어야한다. 建築士들이 報酬率適用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弱勢에 놓여진 位置에 머물고 있다.

이 風土는 過去14年間 建築士自身들이 毅然한 姿勢를 取하지 못하고 建築作品으로서의 対象으로 가아닌 商品去來로서의 “일거리로” 着做하고 建築設計乃至監理業務를 受任하는 行為에 서슴없이 加擔한 끌이 아니겠는가?

社会에서는 依例히 建築設計料率은 한낱 誇張된 基準이며 얼마든지 建築士個人과의 接觸에서 깎아내릴 수 있다고 豪言할 수는 現況으로 물고 왔다. 建築士業務 報酬率을 固守한다는 것은 곧 建築士의 品位保全을 固守하는 것이다. 이것은 建築士個人個人이 한결같이 合心하여 建築士法에서 所期하는 建築士의 品位保全이 唯一의 “舎의 길”임을 銘心할 때 業務受任에서 報酬率을 論謂適用함에 굳굳하게 原則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設使 業務收任을 못하더라도 모든 建築士들이 한사람 빠짐없이 그렇게만 한다면 畢竟是 저어 医師들이 病院에서 医療報酬를 제대로 받게 될 것이다. 勿論 報酬를 제대로 받는 일은

그 만큼 作品活動에 精進하게 되고 作品다운 作品을 만드는데 精力을 쏟게 된다. 요즘같은 不況의 때가 아니라 数年前까지의 全盛期에서 그렇게만 하였더라면 京鄉間의 그 모든 建築物들을 제값 報酬로 作品活動遂行하여 都市는 좀더 정성어린 建物들로 세워놓은 그많은 建物이란 容納이 안되었을 것이다. 勿論 “집장사”가 세워놓은 집도 훌륭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大概의 경우 같은돈을 들이고도 稚拙스런 外貌가 자랑이나하듯 集團으로 櫛比하게 세워져서 동리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問題는 “집장사”들이 企劃하고 建設하는 그 建物들도 반듯이 建築士의 손을 거쳤을 터인데 그려한 끌이고, 数三年内 各地域의 該當官公序에 建築審議 또는 美觀審議機構를 두어서 많은 會員들이 어찌다가 美觀審議에 붙여야 할 建築業務受任 件으로 드나든 뒷이야기로 審議基準도 暖昧한 터에 数三次의 審議通過 아닌 反還을 当하고서 “무엇이 어떻게 그르다”는

説明도 없다면서 울분을 못참아하던 여러 會員同志들의 얼굴이 明滅하면서 그뒤에도 저렇게 “집장사”들의 建築物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그것을 審議對象에서 除外되는範疇에 드는 것으로 믿어서, 그만두고 그뒤의 오늘에는 會員의便宜를 為하여 協会의理事 또는 會員도 上記審議機構의 委員으로 委嘱되었다 한다. 會員作品의 審議에서 會員들의 与論이 反映되는便宜 있기를 바란다. 지난해는 우리建築士들에게는 “建築士”法 最初公布當時에 버금가는 event를 맞았었다. 建築士法改正에 따른 施行令의 改正으

로서 그동안의 建設部의 違大한 對建築士行政計劃의 発現으로 보아서 그 間의 労苦와 對建築士關心에 敬意를 表한다. 다만 時期가 建築不況期가 繼續되는 때 同改正內容에 對処하여야 할 建築士들이 許多한 難處을 생각하면, Shoching moment가 아닐 수 없다. 同令의 建築士品位向上이라는前提(?)下에 一定規模以上의 事務室 面積確保, 助理員確保, 電話確保 等은 昨年の 爆騰한 物価에 뒤따른 事務室賃貸料가 오를대로 오른 이때에 100萬 人口以上都市에서의 3人以上 合同事務所에 60m²以上单一 建物의 내로 限定한 規定에 따라서 具備設定하려니 建築沈滯期의 不況에다 雪上加上의 苦役이 아닐 수 없다. 勿論 餘裕滿滿한 會員들은 오히려 快哉를 부를 좋은 契期를 수 있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길을 걸어온 同人們인데 暫間 그렇게 생각하는 筆者が 오히려 그분들의 人格을 冒瀆하는 浅薄한 思慮가 아닌가 하고 금방 두려워진다. 어쨌든 建築士法 및 同令改正에 따른 免許証更新을 거의 끝마치었고 事務所登録更新은 지난 4월 6일이 法定期日로 많은 會員들이 建築士事務所更新登録은 하였으면서도 住宅은 꼭 合同事務所라야만 事務處理할 수 있는 데도 合同事務所構成이 一齊히 進行 되었는지는 아직 筆者로서는 알길이 없다. 3人合組進行은 앞으로도 繼續될 것으로 予見하면서 여기 筆者の 생각을 詳히하는 것은 그동안 改正內容의 趣旨를 여러機會에 聽取하여오면서도, 理解는 하면서 首肯이 안가는 것은 住宅建築許可에서 3人連署의 責任으로만이 可能하도록 된 것은 그보다 월씬 큰 he種類建物은 (勿論 上位限界 適用도 있는 20層以上에 30,000m²以上 및 (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 15,000m²以上은)亦是 合同事務所라야만 할수 있음도 있으되 事務所가 아니더라도 從前과 같이 可能하다. 比肩하면 住宅工事의 非違建築을 預防하는 方法으로서는 한方法일지 모르지만 그보다 큰·他種類建物은 單獨事務所에서도 할수 있다의 但書에서 아무리 하여도 矛盾 같기만 하다. 筆者뿐만이 아닌 많은 會員들의 생각이同一한 것인기에 펼치는 것이고,

앞으로의 善處補完이 있던지, 筆者를 包含한 많은 會員들의 생각하는 그矛盾이 根源의 틀림이 없다면 위의 住宅과 큰 建物의 転倒 適用의 責任連署制度는 改正 또는 住宅만의 連署責任制度는 再考矯正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20層未滿의 一定規模 以下의 建築 許可에서는 合同事務所로도 좋고 住宅만은 合同事務所라야만 할수 있다는 말은 建築作家로서 그作品 対象의 重要性보다, 그 作品対象이 아닌 作品所有主의 多루기 힘든 것을 重要視한 듯한 것은 매우 理致에 어긋 난다고 본다. 建築物이 住宅은 住宅으로서는 重要한 것이나 아무리하여도 큰 建物쪽이 작은 建物보다 災害가 發生하거나 other建物의 諸事故가 發生하였을 때에 그 被害의 程度는 큰 쪽이 클수록 크기에 比例된 慘状이 더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勿論 그동안의 建築行政에서 住宅工事 遵法施工

에相當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事実이지만 一個建築士가自己個人作品에도一一히 点檢觀察한다는 것은 精誠忍耐時間이 必要한 것인데 合同事務所同僚建築士의 作品마저(서울의 경우는本人除外二人)一一히 같은 努力を 들이며, 같이 責任을 진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現實은 매우 어려우며 자칫 헛圖章 누르기에 흐르기 쉬우며 그 結果는 制裁의 覺悟를 하여야 하는 冷酷한 現實앞에서 몸서리칠 뿐이다. 이런 狀況下에서는 建築의 本來 象徵이 “平和”와 “真美”일진대 作家의 姿勢도 法앞의 畏怖보다, 創作專念과 真美造成에 平和스럽고 喜悅滿腔의 餘裕를 가질 수 있는 雾靄氣가 絶對必要한 것이기에 愚見을 펴 보았다. 国民으로서 遵法을 하여야 함은 猥濫되히 저어 “소크라테스”的 飲毒服從의 心情을 간직 하면서 敢히苦言을 비쳐

보았다. 建築作品活動과 法的制約을 새로운 覺悟로 다짐하면서 “建築士”的 至純한 마음가짐과 処身으로 作品活動을 한다면 法的制約은 오히려 転禍為福格으로 建築士의 品位는 勿論 権能마져 드높여줄것이며 建築士 分野는 그 作品對象爭奪에서 讓歩로 하면 장사꾼스런 바쁜日程에서 解放되어 研究를 為한 思索과 作品專念에 時間을 바칠수 있는 芸術家로서의 “삶”과 또한 思索과 建築士가 建築作家本来의 天職에 喜悅을 느끼며 일한만치의 報酬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風土로 變化될 것이며 그러한 与件에서 다루어진 建築作品은 珠玉과 같은 것들로서 아름답고, 쓸모있고 哲學이 담긴 建築物들이 이나라 錦水江山 곳곳에 調和있게 세워져서 内外에 자랑할수 있고 後世에 驚異와稱頌의 象徵으로 남겨지게 될것이다.

삼봉건축 대표

자연 보호 현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화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현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